

외국대학교 복수(공동)학위 운영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(이하“본교”라 한다.)와 협정을 맺은 외국대학교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 및 교수, 학생교류 등을 통한 복수(공동)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“외국대학교”라 함은 복수(공동)학위 수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정규대학을 말하며 “교육과정 공동운영”이라함은 외국대학교와의 협정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.

② “복수학위(Dual Degree)”라 함은 본교와 외국대학교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각 대학교 명의로 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.

③ “공동학위(Joint Degree)”라 함은 본교와 외국대학교의 졸업여건을 모두 충족하여 양 대학교가 하나의 학위증서에 두 대학교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) 이 규정은 본교와 외국대학교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교수, 학생 교류 등을 통하여 복수(공동)학위를 취득하는 학생에 한하여 적용한다.

제4조(교육운영) ① 본교와 외국대학교는 서로의 교육과정을 비교, 평가하여 복수(공동)학위수여 목적에 부합되는 교육과정을 상호 협정하여 편성 운영한다.

② 본교와 외국대학교는 서로 제공받은 교육과정 자료를 바탕으로 복수(공동)학위 과정의 세부 교육 운영을 위한 방안 등을 개발하고 학생들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 운영한다.

③ 복수(공동)학위 운영에 따른 교육의 질적인 관리를 위한 교수교류 등을 운영한다.

제5조(학위수여) ① 본교 및 외국대학은 졸업(학위수여)기준을 충족한 학생에 대해서 상호 협정된 사항에 따라 복수(공동)학위를 수여한다.

② 협정사항에는 외국대학교의 복수(공동)학위를 수여하는 전공분야 및 인원 등을 명시한다.

제6조(등록 및 학점인정) ① 복수(공동)학위 과정을 수학과기자 하는 자는 당해 대학교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한다.

② 복수(공동)학위 과정의 원만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수강료를 추가 징수 할 수 있다.

③ 복수(공동)학위 수학기간 동안 외국 협약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속대학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하며, 기타사항은 외국대학교의 협약 체결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.

제7조(수료 및 학점이수) 복수(공동)학위를 수료하기 위한 최저이수학점은 학사과정 130학점 이상이며 : 본교에서 65학점 이상 이수, 협약 대학교에서 65학점 이상 이수한다.

제8조(수업연한) 복수(공동)학위 수여에 필요한 수학기간은 양측 대학에서 동등한 기간(2+2)을 수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그 세부사항은 외국대학교의 협정을 통하여 따로 정한다.

제9조(준수사항) 교류학생은 본교와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며, 양국의 출입국관리법 및 제반법규를 준수해야 한다.

제10조(준용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 대학의 협의 및 협약에 의해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교 관련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(2015. 10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